

# 국내 보건복지 동향

보건복지부 2015년 6월 보도자료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 ■ ■ 메르스 극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 “메르스, 바로 알고 극복하자”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감염 관련 7개\* 학회와 공동으로, 6월 4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메르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알아야 할 메르스의 특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했고,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도 안내되었다.

□ 민·관 합동 대책반을 통해 오늘 세미나를 주도한 대한감염학회 등 7개 학회\*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근거 없는 정보의 유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판단들을 지양하고,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

□ 이 자리에 참석한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메르스, 바로 알고 극복하자” 민·관 합동 세미나 개요 >

□ 일시 및 장소

- 일시 : 6월 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포스트타워(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

□ 주최 및 주관 :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반

\* 보건복지부 및 감염 관련 7개 학회 공동(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연자
13:00 - 14:00		등록
14:00 - 14:10	개회사	장옥주 복지부 차관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14:10 - 14:50	알기 쉬운 메르스의 역학적 특성	이진수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14:50 - 15:30	알기 쉬운 메르스의 임상적 접근	엄중식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15:30 - 17:00	패널토론	김흥빈, 손장욱, 김남중, 성흥섭 교수 이재용 복지부 과장

**붙임**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2.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전파) 일반적으로 2m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5.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6. (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7. (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8.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합니다.
9.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
10. (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결과 발표

- ▲ 노인 학대건수 소폭 증가('13년 3,520건 → '14년 3,532건, 0.3% 증가)
- ▲ 시설 내 학대 감소('13년 251건 → '14년 246건, 2% 감소)
- ▲ 노-노 학대 증가('13년 1,374건 → '14년 1,562건, 13.7%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개요 〉

- 수집기간 : 2014년 1월 ~ 12월
- 분석자료 : 전국 2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상담사례
- 주요내용 : 신고접수, 노인학대 유형,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 현황 등
- 보고서 발간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2014년 노인 학대 현황조사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노인 학대 건수는 3,532건(전년대비 12건 증가)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 신고건수(10,569건) 중 학대사례 판정비율(33.4%)은 감소 추세이다.

(단위 :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신고 건수		7,503	8,603	9,340	10,162	10,569
학대사례	건수	3,068	3,441	3,424	3,520	3,532
	비율	40.9	40.0	36.7	34.6	33.4
일반사례	건수	4,435	5,162	5,916	6,642	7,037
	비율	59.1	60.0	63.3	65.4	66.6

※ 일반사례란 학대로 신고되었지만,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사례

- 전체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사례발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생활시설 내 학대는 246건(전년대비 5건 감소)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단위 :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대사례	건수	127	196	216	251	246
	비율	4.1	5.7	6.3	7.1	7.0

○ 이는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종사자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시설 내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한 시설 내 학대 예방에 주력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노인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실시 : 1,737회(42,415명)
- \* 인권지킴이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및 점검 활동 : 생활시설 500개소

③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 전체 학대행위자(3,876명)중 고령자 학대행위자(1,562명) 비중은 40.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노(老)-노(老) 학대란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것으로 주로 “고령자 부부간 배우자학대”, “고령자가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의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로 분류

(단위 :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대행위자 전체건수	3,478	3,866	3,854	4,013	3,876
60세이상 학대행위자 건수	944	1,169	1,314	1,374	1,562
전체 대비 60세 이상 비율	27.2	30.2	34.1	34.3	40.3

\* 학대행위자(가해자)는 중복(배우자와 아들이 동시에 학대하는 경우 등)이 있어 학대건수(3,532건)보다 많은 3,876명 임

- 고령의 학대행위자의 유형을 보면, 고령 배우자에 의한 학대(571건, 36.6%)가 가장 많고, 고령자 본인에 의한 자기방임(463건, 29.6%)과 고령자 아들(186건, 11.9%)에 의한 학대 순으로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 고령자 학대행위 증가는 사회전반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와 노인부부간 갈등,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자녀들의 부양부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현황조사 결과, “노인학대 건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시설 내 학대가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그간의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작년에 발표

한 '노인 학대방지 종합대책'(14.10,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른 후속조치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경로당을 학대 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15.1)하고, 노인 학대 징후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노인 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연령대별(아동, 청·장년층, 노년층)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보급 추진 중에 있다.
  - \* 아동 : 꿈꾸는 할아버지(애니메이션), 예절을 배워요(캠페인) 동영상 제작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배포 완료('14.12)
  - 청장년층 : 부모-자식 간 관계형성방법, 대화기술 등 가정의 기능회복 교육
  - 노년층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피해노인 지원서비스 안내
- 노인을 자주 접하는 생활관리사와 요양보호사 대상 노인학대 스크리닝척도 보급 및 교육 등 통해 학대예방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
  - \* 홍보안내지 "노인행복파트너"에 노인 학대 현황 및 징후, 신고방법 및 절차, 노인 학대징후 스크리닝 척도 등을 구성하여 배포 예정('15. 6)
- 신고의무자에게 노인 학대 인지방법 및 신고요령 등을 담은 노인 학대예방 가이드북 배포('15.6)
- 고령부부 상담 및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급 예정('15년 하반기)

②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
  - \* 노인 학대 현장 출동 시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상호동행 요청 및 현장조사(관계인에 대한 조사·질문)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15.1)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연차별로 확충하여 관할 범위를 축소하고 신속한 현장 출동 조사 실시
  - \* ('13년) 24개소 → ('14년) 27개소 → ('15년) 29개소(7월중 2개소 증설)

③ 학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 쉼터 보호(최대 4개월) 후 재학대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학대 피해 노인보호 양로시설(지정양로시설, 전국 52개)을 지정·운영('15.4)

-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 \* (희망복지지원단) 피해노인 발견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복지서비스 연계(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쉼터  
입소 보호, 피해노인 상담 등
- 정서적 학대 피해자 보호강화 위해 심리·상담 전문인력에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기준 추가  
(‘15.1)
- 학대행위자의 학대 원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연계\*를 통해 재학대 예방
  - \* 가족갈등 상담(알코올 중독·분노조절 문제 포함) : 9,795건 → 정신건강증진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  
원센터 등
    - 경제적 어려움 지원 : 210건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기초수급권, 긴급복지지원 등
    - 부양부담 완화 지원 : 319건 → 장기요양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건강지원(의료비 지급 포함) : 120건 →보건  
소, 지역협력병원(지역별MOU체결) 등

④ 생활시설 내 학대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 장기요양시설평가에 학대관련 점수 확대(‘14.12, 1점→5점)
- 시설종사자 대상 교육소책자(15,000부) 배포(‘14.12)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가족대상 노인학대예방 안내지(45,000부)를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  
(174개)를 통해 배포(‘14.12)
- 시설 내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구성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15.1)
- 시설 유형별 노인학대 예방 가이드북 및 홍보 포스터 배포(‘15.6)

□ 한편 복지부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확대  
(8→14개), 시설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 처벌 강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노인관련 시  
설 취업제한, 학대피해자 신속 개입을 위한 신상정보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  
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06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7개소 운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연도별 설치 현황							
(2015. 6월 기준)							
구분	'04	'06	'09	'10	'11	'14	'15
설치현황	17개소	18개소	20개소	23개소	24개소	27개소	29개소
신설기관	16개 광역시·도 (부산 2개소)	경기북부	충북북부, 전남서부	경기서부, 경북서북부, 강원동부	서울북부	충남남부, 경남서부, 전북서부	강원 대구 (하반기예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개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2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li> <li>-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등</li> <li>- 노인 학대 예방의 교육·홍보 자료 개발 및 보급</li> <li>- 노인보호전문사업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li> <li>-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li> <li>- 상담원의 심화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li> <li>- 노인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li> <li>- 학대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li> <li>-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li> <li>-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li> <li>- 일반인(신고의무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예방 교육</li> </ul>

**참 고 ②**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현황**

□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현황

○ (사업목적)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 피해 노인 보호강화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호(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른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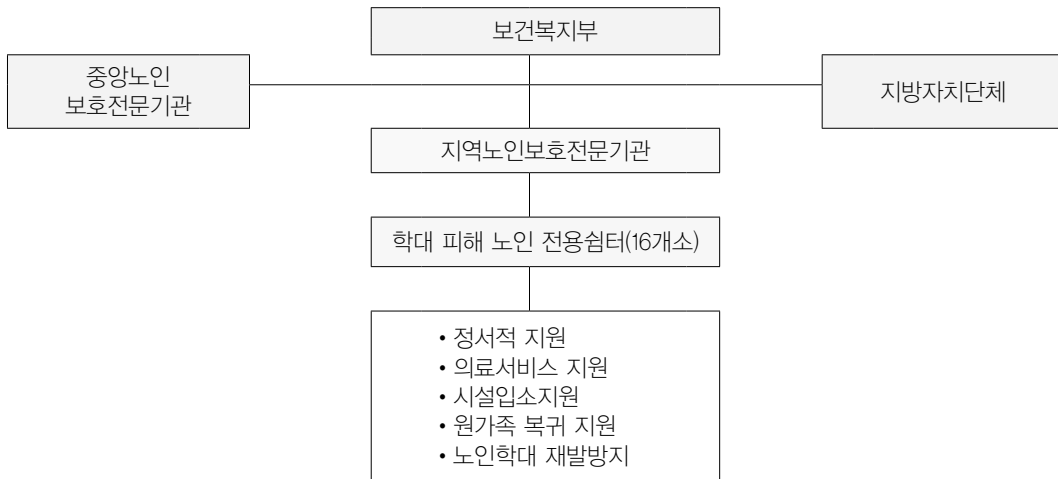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일시보호) 숙식 및 쉼터생활지원 / 보호기간 : 최대 4개월

○ (서비스 제공) 학대 피해 노인 전문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 (원가정 복귀) 학대 재발방지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위해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 체계도





**참 고 ③**

**2014년 연도별 노인 학대 주요 현황**

-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 학대 수치와 노인 학대 유형별 통계수치는 차이가 있음
- ※ 학대 피해 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 피해 노인의 수치와 학대행위자의 수치는 차이가 있음

□ 연도별 노인 학대 신고건수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신고건수	7,503	8,603	9,340	10,162	10,569
증감률	-	14.7	8.6	8.8	4.0

□ 연도별 신고건수 중 학대사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대사례	3,068	3,441	3,424	3,520	3,532
	40.9	40.0	36.7	34.6	33.4
증감률	-	12.2	-0.5	2.8	0.3

□ 연도별 신고건수 중 일반사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사례	4,435	5,162	5,916	6,642	7,037
	59.1	60.0	63.3	65.4	66.6
증감률	-	16.4	14.6	12.3	5.9

□ 연도별 학대 발생 장소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정 내	2,625	2,921	2,909	2,925	2,983
	85.6	84.9	85.0	83.1	84.5
생활시설	127	196	216	251	246
	4.1	5.7	6.3	7.1	7.0
이용시설	22	24	35	42	44
	0.7	0.7	1.0	1.2	1.2
병원	88	65	83	107	100
	2.9	1.9	2.4	3.0	2.8
공공장소	87	92	86	86	74
	2.8	2.7	2.5	2.4	2.1
기타	119	143	95	109	85
	3.9	4.2	2.8	3.1	2.4
계	3,068	3,441	3,424	3,520	3,532
	100.0	100.0	100.0	100.0	100.0

□ 노인 학대유형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체적학대	1,304	1,419	1,326	1,430	1,426
	25.7	24.6	23.8	24.5	24.7
정서적학대	1,981	2,307	2,134	2,235	2,169
	39.0	40.0	38.3	38.3	37.6
성적학대	39	72	63	90	131
	0.8	1.3	1.1	1.5	2.3
경제적학대	574	607	540	526	521
	11.3	10.5	9.7	9.0	9.0
방임	891	1,038	1,042	1,087	984
	17.6	18.0	18.7	18.6	17.0
자기방임	196	236	394	375	463
	3.9	4.1	7.1	6.4	8.0
유기	91	86	71	89	78
	1.8	1.5	1.3	1.5	1.4
계	5,076	5,765	5,570	5,832	5,772
	100.0	100.0	100.0	100.0	100.0

□ 노인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19세	32	30	34	31	12
	0.9	0.8	0.9	0.8	0.3
20~29세	55	61	69	75	63
	1.6	1.6	1.8	1.9	1.6
30~39세	449	436	353	310	347
	12.9	11.3	9.2	7.7	9.0
40~49세	1,022	1,090	993	1,022	911
	29.4	28.2	25.8	25.5	23.5
50~59세	964	1,068	1,091	1,201	981
	27.7	27.6	28.3	29.9	25.3
60~69세	460	536	528	580	602
	13.2	13.8	13.7	14.5	15.5
70세 이상	484	633	786	794	960
	14.0	16.4	20.4	19.8	24.8
파악 안됨	12	12	0	0	0
	0.3	0.3	0.0	0.0	0.0
계	3,478	3,866	3,854	4,013	3,876
	100.0	100.0	100.0	100.0	100.0

□ 노-노 학대행위자 현황(60세 이상)

(단위: 건,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44	1,169	1,314	1,374	1,562
27.2	30.2	34.1	34.3	40.3

□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본인	196	224	394	375	463
	5.6	5.8	10.2	9.3	11.9
배우자	347	481	494	551	588
	10.0	12.4	12.8	13.7	15.2

아들	1,686	1,777	1,586	1,619	1,504
	48.4	46.0	41.2	40.3	38.8
며느리	293	263	248	240	184
	8.4	6.8	6.4	6.0	4.7
딸	441	538	463	519	476
	12.7	13.9	12.0	13.0	12.3
사위	37	25	27	28	18
	1.1	0.7	0.7	0.7	0.5
손자녀	73	87	69	81	56
	2.1	2.2	1.8	2.0	1.4
친척	55	64	67	54	56
	1.6	1.7	1.7	1.3	1.4
타인	237	228	239	253	246
	6.8	5.9	6.2	6.3	6.3
기관	115	179	267	293	285
	3.3	4.6	6.9	7.3	7.4
계	3,480	3,866	3,854	4,013	3,876
	100.0	100.0	100.0	100.0	100.0

□ 노-노 확대행위자 유형(60세 이상)

(단위: 건, %)

피해자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463	571	186	26	57	5	0	31	152	71	1,562
29.6	36.6	11.9	1.7	3.6	0.3	0.0	2.0	9.7	4.6	100.0

■ ■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전략적 자산배분 마련

- 해외투자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등 투자다변화 지속 추진
- 국내주식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절차 마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는 6월 9일(화) 2015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 중기(2016~2020) 자산배분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내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1 중기 자산배분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중기(2016~2020년) 자산배분안을 마련하였다.

○ 중기 자산배분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다.

\* 2015년에는 2016~2020년 기간에 대한 중기 자산배분계획 수립

□ 이날 의결된 2016~2020년 중기 자산배분안에 따르면,

○ 기금위는 향후 5년간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5.5%로 정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0년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0% 내외, 채권 50% 내외,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정하였다.

○ 특히, 기금위는 수익성 제고 및 위험 분산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 기초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지난해 21.9%에서 202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민연금 자산군별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

해외주식 8.82%, 해외채권 6.61%, 해외대체 9.65%

국내주식 3.63%, 국내채권 5.59%, 국내대체 7.04%

※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금위는 2020년 목표 포트폴리오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경우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고려하여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은 비공개 결정

□ 한편, 기금위는 2016년도 기금 수입·지출 계획과 자산배분 등이 담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총 104조 9,637억원, 지출은 총 18조 4,672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 (수입) 연금보험료 수입, 운용수익, 만기회수금 등

(지출)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 2016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중기 자산배분 이행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20.0%, 국내채권 51.4%, 해외주식 13.1%,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1.5%로 정해졌다.
- 이에 따라 2016년말 자산군별 투자금액은 국내주식 113.4조원, 해외주식 74.3조원, 국내채권 291.3조원, 해외채권 22.7조원, 대체투자 65.3조원이 될 전망이다.

【 국민연금 중기 자산배분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구분	2014년말		2016년말		2020년말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비중(%)
주식	140.5	30.0	187.8	33.1	40% 내외
국내주식	83.9	17.9	113.4	20.0	20% 내외
해외주식	56.6	12.1	74.3	13.1	20% 내외
채권	282.0	60.1	314.0	55.4	50% 내외
국내채권	260.5	55.5	291.3	51.4	45% 내외
해외채권	21.5	4.6	22.7	4.0	5% 내외
대체투자	46.7	9.9	65.3	11.5	10% 이상
금융부문 계	469.3	100.0	567.0	100.0	100%

【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 및 비중 】

구분	2014년말		2016년말		2020년말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비중(%)
해외투자 (주식+채권+대체)	102.6	21.9	131.1	23.1	30%이상
국내투자 (주식+채권+대체)	366.7	78.1	435.9	76.9	70%미만

## 2 국민연금 국내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

□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배당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 그간 국내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성향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제약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고, 자본이득 뿐만 아니라 배당수익도 고려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최근 5년 평균) : 선진시장 43.3%, 신흥시장 33.0%, 한국 15.1%

□ 국민연금은 기업이 스스로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다.

○ (기업과의 대화) 배당에 관하여 기준에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과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들을 우선 대상으로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해당 기업이 스스로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공개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공개)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 이후 일정기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 (주주제안 참여) 중점관리기업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에 대해 다른 소수주주가 주주제안 참여를 요청하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적절성을 고려하여 해당 주주제안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③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

□ 기금위는 해외주식 투자허용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먼저,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허용범위를  $\pm 2.0\%p$ 에서  $\pm 3.5\%p$ 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투자허용범위는 기금위가 정한 자산군별 목표비중 대비 실제 투자비중의 변동 허용폭을 말하며, "목표비중 $\pm$ 일정범위"로 설정함

- 그간 해외주식의 목표비중은 크게 증가했으나, 투자허용범위는 큰 변화가 없어 시장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 이번 개정으로 최근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해외주식 부문의 시장 변동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최근(15.1.28) 국민연금법 개정·시행으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기금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도록 명문화되었다.

\* (국민연금법 제102조제4항)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내역 및 기준 등 현황을 매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다.

### ■ ■ ■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반으로 줄어든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시간제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105만명 혜택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둘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 본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2016.1.1.일 시행)

-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보험료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 대상자 : 약 21만명 / 년

#### 2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2015.7.29.일 시행)

-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 대상자 : 약 2만2천명 / 년

### ③ 실업크레딧 사업 근거 마련

#### 〈실업크레딧 개요〉

- (사업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82만명/년, '13년 기준)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으로 하되, 최대 1년
- (인정소득)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 상한)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3/4을 지원받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현재 실업자는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로 분류, 보험료 납부의무 없는 대신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 곤란

-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이의 1/2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3천원 중 4만7천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천원만 내면 된다.

-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과 재산(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이 많은 고액의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제외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의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예정

○ 다만 실업크레딧 사업은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본격 실시될 수 있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홍보, 시스템 개선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병행 개정 필요, 국민연금법은 기 개정(1.28일 공포)되었으나, 고용보험법 개정 안은 국회 법사위 계류 중

**4 압류가 방지되는 연금급여 전용계좌로 입금 가능(2015.7.29일 시행)**

○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다.

\*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방지되는 생계비 인정수준은 150만원

- 전용계좌는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그 계좌번호를 급여수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면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 다만,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 까지만 전용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일반계좌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5 그 밖에 개정사항(2015.7.29일 시행)**

○ 보험료 징수 안내방법이 기존의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모바일 고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징수포털)와 사업장의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까지로 확대된다.

○ 또한, 지역가입자는 2회 이상 체납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 "특히,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 내 '신고센터(www.nps.or.kr) 및 공단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활성화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주 중 공포될 예정

〈 참고 : 사각지대 기대효과 〉



## ■ ■ ■ 건강보험 거짓청구 7개 요양기관 공표

- '15.6.28.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6.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의원 5개, 한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6.28.~2015.12.27.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 '14.9월~'15.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2억 4백만 원임.
  - ※ 당초 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관은 9개 기관이나, 이 중 2개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표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공표 보류됨.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 \*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약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참고자료(1)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참고자료(2)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참고자료(3) 거짓청구 사례

참고자료(4)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

참고자료(5) 현지조사 관련 2014년도 주요 추진 실적

### [참고자료 1]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 □ 제도개요

주요 사항	내 용
법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74조
공표 기준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 * 공표여부 결정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
공표 사항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 방법	복지부·심평원·공단·관할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추가 공표 가능
공표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총 9명 -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의약계(3인), 공단, 심평원, 복지부
공표 절차	① 1차 심의 ⇒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2차 심의(재심의) ⇒ ⑤ 대상자 최종확정 및 공표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근경로

• 홈페이지 초기화면 → 알림 → 명단공표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참고자료 2]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 **요양기관 종별현황**

(단위: 개소)

계	의원	한의원	약국
7	5	1	1

□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단위: 개소)

계	1천만~ 3천만미만	3천만~ 5천만미만	5천만~ 1억미만	1억 이상
7	3	2	2	-

※ 최고 거짓청구금액: 5천 8백만원

□ **거짓청구 비율별 현황**

(단위: 개소)

계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7	6	1

※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 19.54%

- 거짓청구 비율(%): (총 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100

**[참고자료 3] 거짓청구 사례**

□ 'G의원'의 거짓청구 사례

- (사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이종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 거짓청구

**【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수진자 K에 대해 2012년 2월22일과 3월21일에 점 제거술을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100,000원을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D239)'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함.

**【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 거짓청구 】**

실제 약을 투여(경구, 비경구 포함)하지 않았으나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약 투여기록지, 간호기록지)에 거짓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 (처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개월 간 총 58,316,860원을 거짓청구한 'G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6일, 명단공표 조치함

**[참고자료 4]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

- ◇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행정처분
- ◇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 형법상 형사고발 제재

**1] 거짓·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부당이득 환수)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 (업무정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 (과 징 금) 100일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 등은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당금액의 2~5배 이내) 신청 가능

**2]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 (자격정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 (형사고발)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형법 제 347조 사기죄)

-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의 경우 업무정지 1년(또는 180일) 및 형사고발 조치
- (명단공표)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

**[참고자료 5] 현지조사 관련 2014년도 주요추진 실적**

**1] 현지조사 실적**

- (조사대상) '14년도 679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종합병원 14개(2.1%), 병원급 152개(22.4%), 의원급 366개(53.9%), 약국 147개(21.6%)
  - \*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
- (조사결과) '14년도 조사한 679개 기관 중 632개 기관에서 200억원의 부당내역 확인

**2] 행정처분 등 실적**

- (업무정지 등) '14년도 404개소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업무정지 216개소, 과징금 부과 79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109개소

(\*14. 12월말 기준)

행정처분	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만 환수
행정처분 기관수	404개소	216개소	79개소	109개소

- (형사고발)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57개소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
- (명단공표) 2010년 13개, 2011년 38개, 2012년 48개, 2013년 21개, 2014년 22개에 대해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주요 사항	내 용
법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74조
공표 기준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 * 공표 여부 결정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
공표 사항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 방법	복지부·심평원·공단·관할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추가 공표 가능
공표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총 9명 -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의약계(3인), 공단, 심평원, 복지부
공표 절차	① 1차 심의 ⇒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2차 심의(재심의) ⇒ ⑤ 대상자 최종확정 및 공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근경로

<p>• 홈페이지 초기화면 → 알림 → 명단공표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p>
--